

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

보장항목		보장금액 및 보장내용	비고
자연재난	사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	
사회재난	사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(감염병 제외) 	
상해 (자전거, 온누리 공영 자전거 사고 포함)	사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례비 : 2,000만 원 한도 / 총 보상한도 : 30억 원 순천시민(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관광객도 보상)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	
	후유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,000만 원 한도 순천시민(온누리 공영자전거의 경우 관광객도 포함)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(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) 	
	의료비 ※ 실손 의료비 가입자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0만 원 한도 / 총 보상한도 : 30억 원 순천시민(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관광객도 보상) 중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	본인부담금 지급 공제금액: 3만원
자전거	벌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사고 당 2천만 원 한도 순천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 제외)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(만 14세 미만은 제외,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) 	
	처리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해자 1인 당 3천만 원 한도 순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 제외, 동승자 포함)을 사망케 한 경우, “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”로 피해자가 42일 (피해자 1인을 기준)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, “일반교통사고”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, 형법 제268조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, 8 제외)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,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(만 14세 미만은 제외,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) 	

보장항목		보장금액 및 보장내용	비고
자전거	변호사 선임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사고 당 500만 원 한도 • 순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 된 경우(단, 약식기소 제외)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(만 14세 미만은 제외,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시 제외,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) 	
온누리 공영자전거	배상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인배상 청구 당 500만 원 / 총 보상한도 : 30억원 • 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	공제금액: 5만원
대중교통 이용 중	사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,000만 원 • 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(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) 	
	후유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,000만 원 한도 • 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상해를 입어 3~100%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(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) 	
	부상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0만 원 한도 • 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결과로 상해를 입은 경우 (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) 	
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	부상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0만 원 한도 • 순천시민 중 13세 미만 어린이(0세~12세)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서,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 등급(단, 1급~14급)을 받은 경우 (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) 	

※ 상해 종류

자상, 열상, 창상, 절상, 절단상, 좌상(염좌), 타박상, 찰과상, 파열상, 골절상, 동상, 화상, 파상, 떨어짐, 넘어짐, 접질림, 깔림·뒤집힘, 부딪힘·접촉, 맞음, 무너짐, 끼임, 절단·베임, 찌름·찔림, 무리한 자세, 감전, 폭발·파열, 화재, 이상 온도·물체 접촉, 산소결핍(질식), 익수, 동물에 의한 상해, 압박, 기타 상해사고(자전거 상해, 공유형 PM을 포함하는 PM 상해사고 등)